

국회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법률 번호: 84/2015/QH13

산업안전보건법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에 의거하여,
이에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한다.

제I장 총칙

제1조 조정의 범위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와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피해자에 대한 정책과 보상, 산업안전보건 관련 조직 및 개인의 책임과 권리 및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국가적 관리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적용 대상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근로자, 사업주를 위해 근무하는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 견습생 및 인턴
2. 국가 간부, 공무원, 공공 근로자, 인민공안
3. 근로계약 없이 근무하는 자
4.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근로자,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5. 사업주
6.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되는 기타 기관, 조직 및 개인

이 조의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대상들을 이하 통칭하여 근로자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다음의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생산/사업소(production/business establishment)”는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협동조합, 가정 또는 조직을 의미한다.
2. “산업안전(occupational safety)”은 업무상 질병이나 사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해요인을 방지하고 유해요인의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
3. “산업보건(occupational health)”은 업무상 질병을 야기하거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성요인을 방지하고 독성요인의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
4. “유해요인(hazardous factor)”은 업무상 위험한 상황이나 상해 또는 사망을 일으키는 요인을 의미한다.
5. “독성요인(toxic factor)”은 업무상 질병을 초래하거나 건강을 저하시키는 요인을 의미한다.
6. “산업안전보건 실패를 초래하는 기술적 사건(technical incident causing OSH failure)”은 사람이나 재산, 환경에 업무상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소정의 기술적 안전성의 한계를 초과하는 기계, 장비, 자재, 물질의 실패를 의미한다.
7. “산업안전보건 실패를 초래하는 심각한 기술적 사건(serious technical incident causing OSH failure)”은 대대적으로 발생해 생산/사업소, 기관, 조직, 지역에 의해 통제될 수 없거나 생산/사업소, 지역에 의해 많은 사람들과 관련되는 대규모의 산업안전보건 실패를 초래하는 기술적 사건을 의미한다.
8. “산업재해(occupational accident)”는 작업과정 중 할당된 업무 또는 작업의 수행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나 기능에 손상을 일으키거나 사망을 일으키는 재해이다.
9. “업무상 질병(occupational disease)”은 유해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질병이다.

10. “환경 모니터링(Environmental monitoring)”은 근로환경 요소들이 건강에 미치는 해를 최소화하고,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자 사업장에서 근로환경의 요소들을 측정하는 데이터의 수집, 분석, 평가이다.

제4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가 정책

1. 사업주, 근로자, 기관, 조직 및 관련 개인이 작업공정 중 산업안전보건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양호한 조건을 형성한다. 사업주, 근로자에게 작업공정 중 기술 표준과 선진적이고 현대적인 관리 시스템, 첨단 기술의 친환경적 기술을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2. 산업안전보건 관련 과학기술의 연구 및 응용에 투자한다. 국가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충족하는 실험실의 건설과 테스트 개발을 지원한다.
3.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위험성 분야에서 이에 대한 예방을 지원한다. 조직이 작업공정 중 선진적이고 현대적인 산업안전보건 기술 표준을 개발, 발표 또는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4. 엄격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적용되는 일을 하는 근로계약 미체결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훈련의 제공을 지원한다.
5. 산업재해보험의 자발적 가입자 수를 늘린다. 근로자들에 대한 위험성을 예방, 최소화, 개선하기 위해 유연한 지불-보상 메커니즘을 개발한다.

제5조 산업안전보건 보장을 위한 원칙

1.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한다.
2. 작업공정 중 산업안전보건 조치가 실시되도록 보장한다. 작업공정 중 유해요인과 독성요인을 방지, 제거, 관리하기 위한 조치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3. 산업안전보건 정책, 법률,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행의 모든 차원에서 노동조합, 사업주 대표조직 및 산업안전보건 협의회와 협의한다.

제6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1. 근로계약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a)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안전보건 환경에서 일할 권리, 사업주에게 작업공정 중과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근로조건의 보장을 요청할 권리
- b) 사업장의 유해요인과 독성요인에 관한 적절한 정보와 예방 조치를 제공받을 권리,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훈련을 받을 권리
- c) 노동보호제도, 건강관리, 업무상 질병의 발견을 위한 검진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 사업주가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할 권리,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 완전한 보상을 받을 권리,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상해 및 질병의 의료진단 비용이 지불되도록 할 권리, 노동력상실도 판정을 위한 의료진단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권리, 의료진단 결과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더 높은 지급액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평가 비용이 지불되도록 할 권리
- d)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처리 후, 사업주에게 적절한 직무의 배정을 요청할 권리
- dd) 생명이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산업재해의 임박한 위험성을 확실히 인식할 때, 이를 직속상사가 해결할 수 있도록 즉시 통지한 경우,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전액 지불을 받고 사업장을 떠날 수 있고 이것이 근로 원칙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직속 상사와 산업안전보건 담당관이 산업안전보건을 보장하기 위해 확인된 위험성을 이미 처리한 경우에만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
- e)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고소, 고발 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

2. 근로계약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a)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규정, 절차,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고용계약 또는 단체협약에 기재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 b) 사업장에서 제공받은 개인보호구와 기타 산업안전보건 도구를 사용하고 관리해야 한다.

- c) 산업안전보건 실패, 산업재해 또는 업무상 질병을 초래할 수 있는 기술적 사건의 위험성을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응급처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건 해결 및 긴급구조 계획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또는 사업주나 관할 국가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건 및 산업재해 결과를 극복해야 한다.

3. 근로계약이 없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a) 산업안전보건 환경에서 일할 권리, 국가, 사회와 가족에 의해 산업안전보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될 권리
- b) 산업안전보건 정보, 소통 및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 엄격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적용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산업안전보건 훈련을 받을 권리
- c) 정부에 의해 규정된 대로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 권리

사회경제적 발전 상황 및 각 기간의 국가 예산에 따라, 정부는 자발적인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보험의 보험료의 납입에 대한 지원에 대해 자세히 정해야 한다.

- d)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고소, 고발 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

4. 근로계약이 없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a)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해 책임을 진다.
- b) 작업과정 중 관련자의 산업안전보건을 보장한다.
- c) 즉각적인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안전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지역 당국에 통지한다.

5. 다른 법적 규범 문서에 달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 간부, 공무원, 공공 근로자, 인민공안은 이 조의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대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6. 사업주를 위해 근무하는 견습생 및 인턴은 이 조의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근

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권리와 의무와 동일한 산업안전보건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7.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이 조의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권리 및 의무와 동일한 산업안전보건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이들의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보험 가입은 정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7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의 권리와 의무

1.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a) 근로자에게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규정, 절차 및 조치를 준수하도록 요구할 권리
- b) 산업안전보건 규정, 절차 및 조치를 준수한 근로자에게 칭찬, 보상하고 산업안전보건을 위반한 근로자는 징계할 권리
- c)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고소, 고발 또는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
- d) 비상 상황에서 근로자들을 동원해 응급처치 제공에 참여시키고 사건 및 산업재해의 결과를 극복할 권리

2.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a) 자신이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및 관련 사람들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개발 및 이행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기관 및 조직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 근로자들을 위한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
- b) 산업안전보건 규정, 규칙, 절차 및 조치에 대한 훈련과 지침을 제공할 의무, 산업안전보건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장비 및 도구를 적절히 제공할 의무, 업무상 질병의 발견을 위해 건강관리와 건강검진을 제공할 의무,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피해자에게 완전한 보상을 제공할 의무
- c) 근로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사업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게 요구할 의무

- d)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규정, 절차 및 조치가 법에 규정된 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조사할 직원을 임명할 의무
- dd) 산업안전보건 담당부서나 직원을 임명할 의무, 산업안전보건 대표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장의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와 협력할 의무, 산업안전보건 의무와 권한을 확실하게 정할 의무
- e) 심각한 산업안전보건 실패를 초래하는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 및 기술적 사건에 대해 통지, 조사 및 보고할 의무, 산업안전보건 이행에 관한 통계 및 보고서를 작성할 의무,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결론을 이행할 의무
- g) 산업안전보건 계획, 내용, 절차 및 조치의 개발에 있어 사업장의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와 협의할 의무

제8조 베트남 조국전선, 그 가입 조직 및 기타 사회조직의 권리와 의무

1. 베트남 조국전선, 그 가입 조직 및 기타 사회조직, 사회 전문기관은 그 직무와 권한의 범위 내에서 다음에 책임이 있다.
 - a)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소통과 교육, 훈련을 조직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할 책임,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개발
 - b)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산업안전보건 메커니즘, 정책, 법률의 개발 중 의견과 감독, 비판적 피드백을 제공할 책임
 - c) 국가 관리기관과 함께 근로조건 개선과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한 해결책을 제안할 책임,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할 책임
 - d) 일원들이 산업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할 책임
 - dd) 산업안전보건 규정 위반 행위를 발견하고 이의 즉각적인 처리를 위해 이를 관할 국가기관에 보고할 책임
2. 사업주의 대표 조직은 이 조의 제1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고, 이 법의 제88조에 규정된 대로 산업안전보건 협의회에 참여하며, 사업주를 장려하여 사업장에서 대화 및 집단교섭, 단체협약을 조직하도록 할 책임 및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보장을 위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제9조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권리와 의무

1. 국가기관과 함께 산업안전보건 정책과 법률을 개발한다. 관할 국가기관에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권리 및 의무 관련 정책과 법률의 개발과 수정 및 보완에 대해 제안한다.
2.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 정책과 법률의 이행의 조사, 감시, 감독에 참여하고 국가기관과 협력한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규칙, 규정 및 조치의 개발 및 이행의 지도, 감독에 참여한다. 법률에 규정된 대로 산업재해의 조사에 참여한다.
3. 사업장에서 작업과정 중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요인과 독성요인을 발견할 시, 담당 기관, 조직, 기업 및 개인에 산업안전보건 보장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의 시행 및 조업중단을 포함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요구한다.
4. 산업안전보건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가 규정, 규칙, 절차 및 조치를 준수하도록 장려한다.
5. 근로자집단의 산업안전보건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근로자집단을 대표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권리가 침해되고 근로자들에 의해 승인된 경우, 근로자들을 대표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6. 과학/기술을 연구 및 적용하고 산업안전보건 훈련 과정을 조직할 책임,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산업재해/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안할 책임
7. 산업안전보건 대회를 조직함에 있어 국가기관과 협력할 책임, 일반 대중이 산업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하도록 운동을 조직할 책임, 산업안전보건 대표자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그 운영을 지도할 책임
8. 베트남 노동총연맹의 지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활동/운동에 대해 보상을 제공할 책임

제10조 사업소의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권리와 의무

1. 산업안전보건 계획, 규정, 규칙, 절차 및 조치의 개발 및 이행의 감독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이러한 규칙, 절차, 조치의 개발 및 이행의 감독에 있어 사업주와 협력한다.
2. 단체협약에 있어 근로자들을 대표해 산업안전보건 규정의 협상, 서명 및 이행의 감독을 수행한다. 근로자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이 침해될 때, 근로자들이 고소, 소송하는 것을 돕는다.
3. 근로자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권리와 의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와 대화한다.
4. 사업주와 협력하여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조사 및 감독한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준수하는지 감독하고,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준수하도록 사업주에게 요청한다. 산업재해의 조사에 있어 사업주와 협력하고,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 직업 훈련과 적절한 직무의 제공을 감독한다.
5. 사업주, 관할 기관, 조직에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하고, 산업안전보건 실패, 산업재해를 초래하는 기술적 사건의 결과에 대처하고, 산업안전보건 위반 행위를 처리한다.
6.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 법률, 표준, 규정, 프로세스 및 조치를 준수하도록 대화하고 장려한다. 노동조합 직원과 근로자들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훈련을 조직하는 데 있어 사업주와 협력한다.
7.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에 해로울 수 있는 위험성을 감지한 때,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관련 시설의 조업 중단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8. 이 법의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대로 사업소에서 산업재해 조사팀의 일원이 된다. 산업안전보건 실패 및 산업재해를 초래하는 기술적 사건의 결과의 구조 및 시정에 참여하고 사업주와 협력한다. 사업주가 이 법의 제34조에 규정된 대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은 조사를 위하여 이 법의 제35조에 규정된 관할 국가기관에 통지할 책임이 있다.
9. 일반 대중이 산업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하도록 대회와 운동을 조직하는 데 사업

주와 협력한다. 사업장에서 안전한 근로 문화를 창출한다. 산업안전보건 대표자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운영을 지도한다.

10. 노동조합이 없는 생산/사업소에서 상위 수준의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소가 이 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도록 직접 지도해야 한다.

제11조 베트남 농민연합의 권리와 의무

1. 국가기관과 함께, 농민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정책과 법률을 개발해야 한다. 관할 국가기관에 농민의 산업안전보건 권리와 의무 관련 정책과 법률의 개발과 수정 및 보완에 대해 제안해야 한다.
2. 농민의 권리와 의무 관련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이행의 조사, 감시, 감독에 참여하고, 국가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농민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3. 농민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소통과 훈련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4. 농민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예방에 있어 국가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5. 농민들에게 법률에 따른 농민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보장 운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12조 산업안전보건에서 금지되는 행위

1.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에 대한 부정확한 신고와 보고를 은폐하는 행위, 산업안전보건 요구사항과 조치를 불이행하여 사람, 재산, 환경에 피해를 일으키거나 이를 초래하는 행위,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있을 때 근로자가 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사업장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또는 이러한 위험성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게 하는 행위
2.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를 지연하는 행위,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보험의 보험료 및 급부금의 유용,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보험 관련 위조 서류의 작성,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사고 보험

급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보험기금의 오용,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보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불법적 접근이나 이용

3. 엄격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적용되는 기계, 장비, 재료를 사용함에 있어, 평가되지 않고, 규정된 표준을 충족하지 않고, 출처가 불확실하고, 기한이 만료되었거나 규정된 품질 이하의 것이고,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의 사용
4. 안전성 평가, 산업안전보건 훈련, 근로환경 모니터링,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경우 노동력상실도를 판정하기 위한 의료진단에 있어서의 사기,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법적인 산업안전보건 권리와 이익에 대해 장애나 어려움 또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산업안전보건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 생명이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있을 때 근로를 거부하거나 사업장을 떠나는 근로자를 차별하는 행위,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산업안전보건 대표자, 보건 근로자들을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을 수행하는 것 때문에 차별하는 행위
6. 엄격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적용되는 직무에 산업안전보건 훈련을 받지 않은 근로자를 투입하는 행위
7. 현물급여 대신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

제II장 근로자들을 위한 유해요인과 독성요인 방지 및 제어 조치

제1절 산업안전보건에서 정보, 소통, 교육 및 훈련

제13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소통, 교육

1.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유해요인, 독성요인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정보와 소통,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사업소의 방문자와 근로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 규정에 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2. 제조자는 작업공정 중 사용자에게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상품과 제품에 관련된 산업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 기관, 조직, 가정은 근로자들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지식과 기술을 알리고 보급

할 책임이 있다. 작업과정 중 근로자의 건강 및 지역사회에 유해하고 위험한 역행적 실천과 비위생적 습관의 제거에 대해 알리고 옹호할 책임이 있다.

지역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매년 모든 수준의 인민위원회는 지역에서 근로계약 없이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와 소통, 교육의 제공을 지시하고 조직할 책임이 있다.

4. 대중 매체는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 법률, 지식을 알리고 보급하고, 기타 소통 프로그램 및 활동에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예방에 대한 정보를 통합할 책임이 있다.

제14조 산업안전보건 훈련

1. 생산/사업소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자,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보건 근로자와 산업안전보건 대표자는 산업안전보건 훈련에 참여하고 산업안전보건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산업안전보건 훈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정책, 법률 또는 산업안전보건 과학/기술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들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2. 사업주는 엄격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적용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훈련을 실시해야 하고, 이러한 직무에 배정하기 전에 안전 카드를 제공해야 한다.

이 조에 언급된 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수업료 일부를 보조하는 국가정책이 있다. 보조금의 비율은 각 기간의 사회경제적 발전 상황에 따라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3. 근로계약이 없는 근로자들은 엄격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적용되는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 훈련을 받아야 하고 안전 카드를 제공받아야 한다.
4. 사업주는 자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 훈련을 조직해야 하고, 이 조의 제1항, 제2항, 제3항에 정의되지 않은 근로자, 견습생 및 공식적 채용이나 직무 배정 전에 수습 과정 중인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훈련의 품질에 책임이 있다. 업무 과정 및 직무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정기적인 재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5. 이 조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 훈련은 각 직업, 직무, 사업소 개수의 특성과 성질에 부합해야 하고, 생산과 사업 활동에 어려움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생산/사업소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개별적 훈련 또는 종합적 훈련, 화재 예방 및 소방 또는 특별법에 정해진 기타 내용을 구성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6.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관련 부문/영역을 관리하는 직속 부처와 협의한 후 엄격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적용되는 직무의 목록을 공표하여야 한다.
7. 산업안전보건 훈련 기관은 투자 법률과 이 법에 따라 공공 비영리기관과 산업안전보건 훈련 제공기관을 포함한다.

기업이 이 조의 제1항, 제2항, 제3항에 정의된 대상에 대해 자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 훈련을 조직하는 경우, 기업은 산업안전보건 훈련 기관에 적용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8. 정부는 이 조의 제7항에 정의된 산업안전보건 훈련 기관의 운영 허가를 부여, 재부여, 연장 또는 회복하기 위한 인프라, 기법, 산업안전보건 훈련자 표준, 명령, 절차 및 관련 문서의 요구사항을 결정하는 관할 당국과 산업안전보건 훈련과 자체 훈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해야 한다.

제2절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보장을 위한 규정, 절차 및 조치

제15조 산업안전보건 보장을 위한 규정 및 절차

국가 산업안전보건 법률, 표준, 그리고 지역적 산업안전보건 기술 규정과 그 사업, 생산 및 근로조건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 및 절차를 개발, 발표하고 그 이행을 체계화해야 한다.

제16조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보장에 있어 사업주의 책임

1. 관련 기술 규정에 명시된 바오 같이 공간, 환기, 분진, 증기, 유독가스, 방사선, 전자기, 열, 습기, 소음, 진동, 미생물, 그리고 기타 유해요인과 독성요인 측면의 요구사항이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요인들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측정한다. 보건부 장관이 정한 대로 적절한 샤워실과 화장실을 충분히 구비해야 한다.

다.

2. 기계, 장비, 용품 및 물질이 사업장에서 국가 산업안전보건 기술 규정에 따라 사용, 작동, 관리 및 수리되도록 해야 한다. 또는 발표 및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 기술 표준과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3. 근로자가 유해요인과 독성요인이 있는 직무를 수행할 때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제공해야 한다.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유해요인과 독성요인을 제거 및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고자 사업장에서 유해요인과 독성요인을 매년 또는 필요시 검사하고 평가해야 한다.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근로자의 건강을 돌보아야 한다.
5. 기계, 장비, 용품, 물질, 작업장, 창고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6. 엄격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적용되는 기계, 장비, 용품 및 물질에 대해, 베트남어 및 근로자가 사용하는 언어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잘 보이고 눈에 띄는 경고 및 지시 간판을 제작하고, 사업장 및 해당 물품의 보관, 사용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7. 사업장에서 업무상 유해요인과 독성요인을 예방, 제어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규정, 규칙, 절차, 조치에 대해 근로자에게 정보와 소통 또는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8. 사업장에서 사건 해결 및 긴급구조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위험성 발견 시 또는 사업주가 통제할 수 없는 산업안전보건 실패를 초래하는 산업재해와 기술적 사건의 발생 시, 사건을 해결하고 긴급구조를 제공하며, 구조팀을 창설하여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17조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을 보장함에 있어 근로자의 책임

1. 업무와 관련해 사업주 또는 관할 국가기관이 발표한 규정, 규칙, 절차 및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을 준수하고, 산업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터득해야 한다. 할당받은 업무/직무 수행 시, 사업장에서 제공받은 개인보호구와 산업안전보건 시설을 사용하고 관리해야 한다.

3. 엄격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적용되는 기계, 장비, 용품 및 물질의 사용 전에 산업안전보건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4.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실패, 산업안전보건 규정 위반의 직접적인 위험성을 방지해야 한다. 산업재해, 사건 또는 사건의 위험성, 산업재해 또는 업무상 질병을 발견할 시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구조 제공, 사건 해결 및 긴급구조 계획서에 따라서, 혹은 사업주나 관할 국가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건 및 산업재해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18조 사업장에서 유해요인과 독성요인의 관리

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기술적 조치를 개발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사업장에서 유해요인과 독성요인을 평가하고 통제해야 한다. 독성 또는 오염 요소가 있는 영역에서 오염제거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2. 보건부 장관이 규정한 대로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된 접촉 하에 있는 독성요인에 관해, 사업주는 적어도 년 1회 독성요인 평가를 위해 근로환경 모니터링을 제공해야 한다. 근로환경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조직은 인프라,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3. 유해요인에 관해,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적 요건에 따라 유해요인을 정기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고, 적어도 년 1회 법률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러한 요인들의 조사와 평가를 조직해야 한다.
4. 독성요인을 평가하기 위한 근로환경 모니터링의 결과와 유해요인의 조사, 평가 및 관리의 결과를 이용할 수 있을 시, 사업주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a) 근로환경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유해요인의 조사, 평가 및 관리가 실시되는 구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 b) 노동조합, 관할 기관, 조직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c) 산업안전보건을 보장하고 근로자를 위한 건강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유해요인과 독성요인을 처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5. 정부는 사업장에서 유해요인과 독성요인의 통제 및 투자법 및 기업법에 따라 근로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조직의 운영 조건에 대해 세부사항을 정해야 한다.

제19조 심각한 산업안전보건 실패를 초래하는 기술적 사건을 해결하고 긴급구조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

1. 사업주는 심각한 산업안전보건 실패를 초래하는 기술적 사건을 해결하고 긴급구조를 제공하고,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훈련을 조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심각한 산업안전보건 실패와 산업재해를 초래하는 기술적 사건의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응급처치를 보장하기 위한 기술과 의료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2. 심각한 산업안전보건 실패를 초래하는 기술적 사건의 해결과 긴급구조 제공의 책임
 - a) 사업주는 산업재해와 심각한 산업안전보건 실패를 초래하는 기술적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기계 및 장비의 가동과 용품, 물질의 사용, 사업장에서의 활동의 즉각적인 중단을 즉시 명령해야 한다. 근로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업무를 계속하거나 사업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계획서 및 심각한 산업안전보건 실패를 초래하는 기술적 사건의 해결에 따라 시정조치와 기타 조치를 이행하고, 사람과 재산을 구하기 위한 긴급구조를 제공하고, 근로자와 사업장 주변인, 재산과 환경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을 보장해야 한다. 사건이나 긴급구조가 발생한 지역의 당국에 신속하게 통지한다.
 - b) 생산/사업소에서 심각한 산업안전보건 실패를 초래하는 기술적 사건의 발생 시, 사건이 발생한 지역 및 사업소의 사업주 그리고 지역 당국은 신속하게 인력과 물자와 수단을 동원해 특별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 c) 다양한 생산/사업소 및 지역과 관련되는 심각한 산업안전보건 실패를 초래하는 기술적 사건의 발생 시, 사건이 발생한 사업소의 사업주 및 지역 당국은 해당 사건을 해결하고, 이를 특별법에 정해진 직접 관리 수준에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다.

사건이 생산/사업소 및 지역의 대응 능력 밖인 경우,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다른 생산/사업소 및 지역의 지원을 적시에 동원하기 위해 직접적인 관

리 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동원된 생산/사업소와 지역은 협력해야 하고, 능력과 권한의 범위 내에서 긴급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3. 정부는 이 조의 세부사항을 정해야 한다.

제20조 근로조건의 개선과 안전한 근로 문화의 창출

1.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의 개선과 안전한 근로 문화의 창출을 위한 활동에 근로자를 참여시키기 위해 사업소의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와 정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2. 사업주는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보장을 위해, 생산 및 사업 활동에 기술 표준과 선진적이고 현대적인 관리 시스템, 첨단 기술의 친환경적 기술을 적용하도록 권장된다.

제3절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 보호와 건강관리

제21조 근로자들을 위한 건강검진과 업무상 질병의 치료

1. 사업주는 적어도 년 1회 근로자를 위한 건강검진을 제공해야 한다. 과중, 유독, 유해한 작업을 수행하거나 매우 과중, 매우 유해하고 유독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미성년 근로자, 고령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6개월에 1회의 건강검진이 제공되어야 한다.
2. 이 조의 제1항에 규정된 건강검진 제공 시, 여성 근로자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야 하고, 업무상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있는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업무상 질병의 발견을 위한 의학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사업주는 근로자들을 직무에 할당하기 전에, 그리고 그들을 더 힘들고 유해하거나 더 유독성이 있는 직무에 전환 배치하기 전에, 또는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한 후에 건강검진을 준비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노동력상실도에 대해 의료진단위원회의 결론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사업주는 기술적 요구사항과 표준을 충족하는 보건시설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건강검진과 업무상 질병의 발견을 위한 의학적 검사를 제공해야 한다.

5. 사업주는 업무상 질병으로 진단받은 근로자를 보건부 장관이 정한 방침에 따라 치료를 위한 기술적 표준을 충족하는 보건시설로 안내해야 한다.
6. 이 조의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규정된 대로 사업주가 지불하는 근로자의 건강검진, 업무상 질병의 발견을 위한 의학적 검사, 업무상 질병의 치료를 위한 비용은 기업소득세법에 따라 과세소득의 결정 시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행정기관과 서비스 활동이 없는 비영리기관에서는 경상비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22조 과중, 유해, 유독 업무/직업

1. 과중, 유해, 유독 업무/직업과 매우 과중, 유해, 유독 업무/직업은 각 업무 및 직업의 특성과 근로조건에 따라 분류된다.
2.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보건부와 협의 후 과중, 유해, 유독 업무/직업과 매우 과중, 유해, 유독 업무/직업의 목록을 발표해야 한다.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자를 분류하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
3. 사업주는 법률에 따라 과중, 유해, 유독 업무/직업과 매우 과중, 유해, 유독 업무/직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노동 보호와 건강관리에 대한 규정을 충분히 이행해야 한다.

제23조 사업장 내 개인보호구

1. 사업장에서 유해요인과 독성요인에 접촉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제공받아야 하고, 작업과정 중 개인보호구를 사용해야 한다.
2. 사업주는 유해요인과 독성요인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3. 개인보호구를 제공할 때,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a) 국가의 기술 표준 및 규정에서 정하는 품질을 갖춘 올바른 종류의 개인보호구를 올바른 수혜자에게 정확한 수량으로 제공해야 한다.
 - b) 개인보호구 대신 금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에게 그들이 직접 개인

보호구를 사도록 요구하거나 개인보호구를 사기 위해 근로자로부터 금전을 받아서는 안 된다.

c) 개인보호구를 사용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지시하고 근로자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d) 중독, 감염 및 방사능 오염의 위험성이 있는 구역에서 사용되는 개인보호구에 대해 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해독, 소독, 방사능 오염제거의 실시를 준비해야 한다.

4.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개인보호구 제공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제24조 현물급여

1. 사업장에서 유해요인과 독성요인에 접촉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현물 급여를 제공받아야 한다.

2. 현물급여의 제공 원칙은 다음과 같다.

a) 신체의 저항력과 해독력 증가를 돕는다.

b) 편리성과 식품 안전을 보장한다.

c)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모든 적격 근로자에게 현물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일의 근무조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3.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현물급여의 제공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

제25조 유해요인과 독성요인이 있는 근로조건에서의 근로 시간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해요인과 독성요인에 접촉하는 시간이 관련 국가적 기술 규정과 관련 법률에 정해진 안전한 범위 내에 있도록 해야 한다.

2. 과중, 유해, 유독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26조 건강 회복

사업주는 과중, 유해, 유독 업무/직업 또는 매우 과중, 유해, 유독 업무/직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와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매년 건강 회복 활동을 준비하도록 권장된다.

제27조 근로자의 건강관리

1.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관련 직무를 할당하기 위해 각 직무/직업에 대해 정해진 건강 기준과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한다.
2.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업보건 기록과 업무상 질병 피해자의 건강 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근로자에게 건강검진과 업무상 질병의 발견을 위한 의학적 검사의 결과에 대해 알린다. 매년 관할 건강관리 기관에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보고한다.

제4절 엄격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적용되는 기계, 장비, 용품 및 물질의 관리

제28조 엄격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적용되는 기계, 장비, 용품 및 물질

1. 엄격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적용되는 기계, 장비, 용품 및 물질이란, 생산 및 작업 과정 중 제조자의 지시대로 적절하게 운송, 보관,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와 사람들의 건강 및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기계, 장비, 용품 및 물질을 말한다.
2.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이 법의 제33조에 규정된 부처의 요청에 따라 엄격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적용되는 기계, 장비, 용품 및 물질의 목록을 공표해야 한다.

제29조 엄격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적용되는 기계, 장비, 용품 및 물질의 생산, 사용, 보관 및 저장에 사용되는 공장/인프라의 건설, 확장 또는 개조 시 산업안전보건 계획의 개발

1. 엄격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적용되는 기계, 장비, 용품 및 물질의 생산, 사용, 보관 및 저장에 사용되는 공장/인프라의 건설, 확장 또는 개조의 승인을 위해 관할 기관에 제출하는 투자자와 사업주의 문서에는 사업장과 환경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인프라와 공장의 위치 및 규모
- b) 인프라와 공장의 항목의 목록 및 설명
- c) 유해요인, 독성요인의 목록과 설명, 심각한 산업안전보건 실패를 초래하는 기술적 사건을 해결하고 긴급구조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
- d) 유해요인과 독성요인을 최소화하고 제거하기 위한 조치, 사건 해결 및 긴급 구조 계획

제30조 엄격한 산업안전보건 요구사항의 적용을 받는 기계, 장비, 용품 및 물질의 사용

- 1. 엄격한 산업안전보건 요구사항의 적용을 받는 기계, 장비 및 용품은 출처가 확실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양질의 품질이어야 한다. 특별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법의 제31조 제1항에 규정된 대로 평가되어야 한다.
- 2. 엄격한 산업안전보건 요구사항의 적용을 받는 기계, 장비, 용품 및 물질의 사용, 중지 및 폐기는 이러한 제품이 이 법의 제33조의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특별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조직 및 개인이 성(省)과 중앙직할시(이하 성급)의 인민위원회하의 특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3. 엄격한 산업안전보건 요구사항의 적용을 받는 기계, 장비 및 용품의 사용 중, 조직과 개인은 관련 기술 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의 수행 및 기술적 안전기록을 개발 및 정리할 책임이 있다.

엄격한 산업안전보건 요구사항의 적용을 받는 물질의 사용은 화학 법률과 특별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31조 엄격한 산업안전 요구사항의 적용을 받는 기계, 장비 및 용품의 평가

- 1. 엄격한 산업안전 요구사항의 적용을 받는 기계, 장비 및 용품은 사용하기 전에 평가해야 하고, 사용 중에 산업안전 평가를 제공하는 조직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2. 엄격한 산업안전 요구사항의 적용을 받는 기계, 장비 및 용품의 평가는 정확하고 개방적이며 투명해야 한다.
3. 정부는 산업안전 평가를 제공하는 조직의 운영 면허를 부여, 재부여, 연장 또는 회복하기 위한 인프라와 기술, 명령, 절차, 관련 문서의 요건을 정하는 관할 당국과 서비스 사용자들의 평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평가기관의 표준, 엄격한 산업안전 요구사항의 적용을 받는 기계, 장비 및 용품의 평가의 수행에 대해 세부사항을 정해야 한다.

제32조 산업안전평가 제공기관의 권리와 의무

1. 산업안전평가 제공기관에는 공공 비영리기관과 산업안전평가 제공기관이 포함된다.
2. 산업안전평가 제공기관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a) 평가 서비스 계약에 따라 평가 활동을 이행할 권리
 - b) 기계, 장비 및 용품의 평가에 요구되는 안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권리
 - c) 평가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호소, 고소, 고발할 권리
 - d) 평가할 대상이 있는 조직이나 개인에게 평가 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권리
3. 산업안전평가 제공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a) 평가 서비스에 대한 운영 면허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 b) 평가 프로세스에 따라 평가를 이행할 의무
 - c)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률에 규정된 대로 평가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불할 의무. 오류가 발견된 경우, 발표된 평가 결과를 철회할 의무

d) 매년, 이 법의 제33조의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관할 전문 관리기관과 국가의 노동관리기관에 법에서 규정된 대로 수행한 평가 활동에 대해 보고할 의무

dd) 평가 기록의 정리 의무

제33조 엄격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적용되는 기계, 장비, 자재, 용품 및 물질에 대한 국가적 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책임

1. 각 부처는 엄격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적용되는 기계, 장비, 자재, 용품 및 물질에 대한 국가적 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책임이 있다.

a) 보건부는 식품, 의약품, 백신, 의료제품, 화장품, 인체용 의약품 생산 원료, 가정용 화학물질, 살충제, 소독제, 의료기기와 관련해 엄격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적용되는 기계, 장비, 자재, 용품 및 물질에 대한 국가적 관리를 담당한다.

b) 농업농촌개발부는 작물, 가축, 비료, 사료, 살충제, 동물 의약품, 농업 및 임업에 사용되는 생물학적 제제, 소금 생산, 어업, 관개 공사, 제방과 관련해 엄격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적용되는 기계, 장비, 자재, 용품 및 물질에 대한 국가적 관리를 담당한다.

c) 운송부는 운송 수단, 적재/하역 장비 및 시설, 운송 서비스, 해양의 탐사/개발 장비와 시설, 교통 인프라와 관련해 엄격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적용되는 기계, 장비, 자재, 용품 및 물질에 대한 국가적 관리를 담당한다.

d) 산업무역부는 압력 장비, 산업용 리프팅 장비, 화학물질, 산업 폭발물, 채굴 시설, 해양의 탐사/개발 장비와 시설을 제외하고 석유 및 가스 관련해 엄격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적용되는 기계, 장비, 자재, 용품 및 물질에 대한 국가적 관리를 담당한다.

dd) 건설부는 건설에 사용되는 것으로, 엄격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적용되는 기계, 장비, 자재, 용품 및 물질에 대한 국가적 관리를 담당한다.

e) 과학기술부는 원자로, 핵원료, 핵원료 물질, 방사성 물질,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국가적 관리를 담당한다.

- g) 정보통신부는 라디오와 TV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에 대한 국가적 관리를 담당한다.
- h) 국방부는 국방 및 방어를 제공하는 군사적 수단 및 장비, 무기, 탄약, 물자 및 제품에 대한 국가적 관리를 담당한다.
- i)公安부는 이 항의 h)에 달리 정해지지 않은 한, 소방 장비, 기술 장비, 무기, 탄약, 물자, 지원 도구에 대한 국가적 관리를 담당한다.
- k) 노동보훈사회부는 이 항의 a, b, c, d, dd, e, f, g, h, i에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엄격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적용되는 근로자를 위한 개인보호구, 기계, 장비, 자재, 용품 및 물질에 대한 국가적 관리를 담당한다.

2. 사회경제적 발전 상황과 국가적 관리 요구사항에 따라, 노동보훈사회부는 이 조의 제1항에 규정된 엄격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적용되는 새로운 기계 장비, 용품, 물질 또는 여러 부처의 관리와 관련되고 이 조의 제1항에 의해 특정 부처에 의해 관리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것으로, 엄격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적용되는 기계, 장비, 용품 및 물질의 관리에 책임이 있는 구체적인 기관의 지정에 대한 결정을 정부에 제출 시 구체적인 분야/영역을 관리하는 직속 부처와 협력할 책임이 있다.

3. 이 조의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엄격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적용되는 기계, 장비, 용품 및 물질에 대한 국가적 관리와 이 법의 제28조의 제2항에 규정된 엄격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적용되는 기계, 장비, 용품 및 물질의 목록에 대한 국가적 관리에 대한 권한에 따라, 각 부처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a) 자기 부처 관리하의 엄격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적용되는 기계, 장비, 용품 및 물질의 상세한 목록을 작성해 이를 발표를 위해 노동보훈사회부에 보낸다.
- b) 노동보훈사회부와 협의 후 자기 부처 관리하의 엄격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적용되는 기계, 장비, 용품 및 물질의 평가를 위한 절차를 발표한다.
- c) 자기 부처의 국가적 관리하의 평가 활동이 이 조의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대로 수행되는지 조사한다.

- d) 특별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의 제1항과 제2항에 정의된 엄격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적용되는 기계, 장비, 용품 및 물질의 관리에 대해 노동보훈사회부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한다.
- 3. 노동보훈사회부는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정부에 제출할 엄격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적용되는 기계, 장비, 용품 및 물질 목록이 각 기간에 사회경제적 발전, 과학, 기술 및 관리 수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이 목록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한 검토에 앞장서야 한다.
- 4. 노동보훈사회부는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엄격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적용되는 기계, 장비, 용품 및 물질 목록이 각 기간에 사회경제적 발전, 과학, 기술 및 관리 수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이 목록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한 검토에 앞장서야 한다.

제III장 산업안전보건 실패,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을 초래하는 기술적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

제1절 산업안전보건 실패,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을 초래하는 기술적 사건의 신고, 조사, 보고

제34조 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건 실패를 초래하는 기술적 사건의 신고

1. 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건 실패를 초래하는 기술적 사건의 신고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 a)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건 실패를 초래하는 기술적 사건의 발생 시, 재해의 피해자 또는 목격자는 시정 조치를 위해 이를 직속 상사나 사업주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 b) 적어도 두 명의 근로자에게 사망이나 상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 조의 a)에 언급된 사고의 경우, 사업주는 즉시 사고가 발생한 성급 국가노동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치명적인 산업재해의 경우, 사업주는 또한 현, 시, 성도, 중앙직할시 하의 시(이하 현급) 경찰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c) 원자력, 석유·가스 탐사 및 개발, 철도, 수로, 도로, 항공운송 및 인민군 분야에서 재해 및 사건 발생 시, 사업주는 특별법에 규정된 대로 신고의 책임

이 있다.

- d) 근로계약이 없는 근로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초래하는 산업재해의 발생 시, 피해자의 가족이나 목격자는 사고가 발생한 사(社), 방(防), 촌(이하 사급)의 인민위원회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 즉각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두 명의 근로자에게 사망이나 상해를 초래하는 재해의 경우, 사(社)의 인민위원회는 사고가 발생한 현(縣) 경찰 기관과 성의 국가노동기관에 이를 신고하여 즉각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로계약이 없는 근로자와 관련되는 산업안전보건 실패를 초래하는 기술적 사건의 발생 시, 목격자는 기술적 사건이 발생한 사의 인민위원회에 이를 신고해야 하고, 이 법의 제19조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 2. 관할 당국과 조직은 책임 범위 내에서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 실패를 초래하는 기술적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고 다루어야 하며, 이러한 재해/사건을 신고하는 기관, 조직, 개인의 요청 시 그들의 개입을 통지해야 하며, 제보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제35조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 실패를 초래하는 기술적 사건, 심각한 산업안전보건 실패를 초래하는 기술적 사건에 대한 조사

- 1. 사업주는 이 조의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대로 조사된 경우나 특별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관할 국가기관에 의해 조사된 산업재해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들의 관리하의 근로자에게 경미한 상해나 심각한 상해를 초래하는 산업재해를 조사하기 위해 그들의 사업소 내에 조사팀을 구성할 책임이 있다.

사업소의 산업재해 조사팀의 구성은 팀장으로 사업주 또는 사업주에 의해 서면으로 승인된 자와 팀원으로서 사업소의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의 대표자 또는 사업소에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자,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건강관리 근로자 및 기타 구성원들을 포함해야 한다.

근로계약이 없는 근로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초래하는 산업재해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사(社)의 인민위원회는 사고 기록부를 작성하고, 사고가 발생한 현의 인민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2. 성의 국가노동관리기관은 이 조의 제4항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근로계약이 없는 근로자를 포함해 적어도 두 명의 근로자에게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를 초래한 산업재해를 조사하기 위해 성의 조사팀을 구성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고소, 고발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사업소의 조사팀이 이미 조사한 산업재해를 재조사할 책임이 있다. 산업재해에 대한 성의 조사팀의 구성은 팀장으로 성의 국가노동관리기관에서 배치된 산업안전보건 전문 감독관과 팀원으로 성의 보건부 대표자, 성의 노동연맹 대표자, 그리고 일부 기타 구성원을 포함해야 한다.
3.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이나 관할 국가기관은 산업재해의 조사가 성의 조사팀의 능력 범위 밖인 심각한 성질이나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산업재해에 대해, 이를 조사하기 위해 중앙 수준의 조사팀을 구성해 성의 조사팀이 이미 조사한 산업재해를 재조사해야 한다.

산업재해에 대한 중앙조사팀 구성은 노동보훈사회부, 보건부, 베트남 노동총연맹 그리고 기타 일부 구성원을 포함해야 한다.

4. 이 법의 제34조 제1항 c)에 명시된 재해와 사건에 대해, 특별법과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감독관과 협력하여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5.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 실패 또는 심각한 산업안전보건 실패를 초래하는 기술적 사건과 관련되는 사업주와 개인은 조사팀과 협력하여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조사 과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퇴근하는 길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할 국가기관은 조사팀에 다음 문서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 a) 현장조사 기록부와 사고 현장도
 - b) 교통사고 조사 기록부
 - c) 이 항의 a)와 b)에 정의된 문서의 경우,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가족의 요청 시, 사고에 대한 확인서가 사고가 발생한 사, 방, 촌의 경찰 기관에 의해 발행되어야 한다.
6. 이 조의 제1항, 제2항, 제3항에 명시된 사업소의 조사팀, 성의 조사팀과 중앙조사팀에 의한 산업재해의 조사 기간은 산업재해에 대한 정보의 수령 시 또는 산업재해의 신고 시부터 산업재해 조사 기록부가 공개될 때까지로 계산되어야 한다.

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a) 근로자에게 경미한 상해를 초래한 산업재해의 경우 최대 4일
- b) 근로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초래한 산업재해의 경우 최대 7일
- c) 적어도 두 명의 근로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초래한 산업재해의 경우 최대 20일
- d) 치명적인 산업재해의 경우 최대 30일. 기술적인 평가 또는 법의학적 조사를 요구하는 산업재해의 경우 최대 60일. 조사 기관에 의해 조사되었지만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된 범죄의 징후가 있는 산업재해의 경우, 조사 기간은 사고와 관련되는 모든 문서, 물건, 수단을 산업재해 조사팀이 수령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복잡하게 전개되는 이 항의 b), c) 및 d)에 규정된 산업재해의 경우, 조사 기간은 1회 연장될 수 있으나, 연장 기간은 b), c) 및 d)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조사팀장은 연장을 제안하고, 이 항의 b), c) 및 d)에 규정된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팀의 설치 결정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 7. 이 조의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산업재해의 조사 중 범죄의 징후가 발견된 경우, 조사팀은 보고서 및 관련 문서, 물건 및 수단(있는 경우)을 조사 기관에 송부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대로 고려 및 소추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소 권고를 처리하기 위한 기한은 형사소송법에 따라야 한다. 조사 기관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조사 기관은 산업재해와 관련되는 문서와 물건, 수단을 산업재해 조사팀에 제공하고 전달해야 한다.

- 8. 산업재해 조사록은 조사팀장이 주재하고 산업재해 조사팀, 사업주 또는 사업주에 의해 서면으로 승인받은 자, 노동조합 대표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그리고 사고 관련되는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참석한 회의에서 공개되어야 한다. 치명적인 산업재해의 경우는 회의에 또한 경찰 기관의 대표자와 동등한 수준의 인민검찰원의 대표자가 참석해야 한다.

산업재해 조사록과 이를 발표하는 회의의 회의록은 조사팀원의 소속 기관과 국가노동관리기관,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소의 사업주, 사고의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9. 산업재해 조사록과 산업재해에 관한 기타 필요한 정보를 발표할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이 조의 제1항에 정의된 산업재해 조사가 사업주에 의해 조직된 경우는 사업주가 정보를 발표한다. 사의 인민위원회에서 산업재해 조사록을 작성한 경우는 사의 인민위원회가 그 정보를 발표한다.

b) 이 조의 제2항과 제3항에 정의된 산업재해 조사를 담당하는 산업재해 조사팀장과 국가기관은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c) 산업재해 조사를 담당하는 산업재해 조사팀장과 국가기관은 특별법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산업재해 조사록과 이를 발표하는 회의의 회의록을 수령한 후,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소의 근로자들에게 이를 공개해야 한다. 근로계약이 없는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사의 인민위원회가 이를 사람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d) 이 조의 제4항에 정의된 산업재해와 사건, 산업안전보건 실패 또는 심각한 산업안전보건 실패를 초래하는 기술적 사건의 조사를 담당한 조사팀장 또는 국가기관은 특별법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조사 기간의 만료 후에 조사록과 기타 관련되는 필요한 정보를 발표할 책임이 있다.

10. 이 조에 정의된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 실패 또는 심각한 산업안전보건 실패를 초래하는 기술적 사건의 조사가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에 피해를 주도록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사업주는 법률에 규정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11. 정부는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 실패 또는 심각한 산업안전보건 실패를 초래하는 기술적 사건의 분류, 신고, 조사 및 보고, 그리고 기소 결정이 난 산업재해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의 세부사항을 정해야 한다.

제36조 산업재해, 심각한 산업안전보건 실패를 초래하는 기술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보고

1. 사업주는 특별법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그들의 사업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심각한 산업안전보건 실패를 초래하는 기술적 사건을 조사해 년 2회 및 년 1회 성의 국가노동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2. 사의 인민위원회는 제34조 제1항 d)에 정의된 근로계약이 없는 근로자와 관련 되는 산업재해 및 심각한 산업안전보건 실패를 초래하는 기술적 사건을 조사해 년 2회 및 년 1회 현의 인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성의 국가노동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3. 성의 국가노동관리기관은 이 조의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대로 조사, 보고된 산업재해 및 심각한 산업안전보건 실패를 초래하는 기술적 사건을 노동보훈사회부에 보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a) 지역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산업재해 및 심각한 산업안전보건 실패를 초래하는 기술적 사건에 대한 긴급 보고서 제출
 - b)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심각한 산업안전보건 실패를 초래하는 기술적 사건 및 산업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반기 및 연례 보고서 제출
4. 반기 및 연간 기준으로, 보건부는 피해자가 보건시설에서 의학적 검사 및 치료를 받은 산업재해를 조사해 보고서를 노동보훈사회부에 송부해야 한다.
5. 노동보훈사회부는 산업재해, 심각한 산업안전보건 실패를 초래하는 기술적 사건에 관한 데이터의 수집, 저장, 집계, 제공, 발표 및 평가를 체계화하고 안내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산업안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및 관리를 체계화해야 한다.

제37조 업무상 질병에 대한 조사 및 보고

1. 모든 업무상 질병 사례는 보건부 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기록 및 보고되어야 한다.

업무상 질병 목록은 노동보훈사회부, 베트남 노동총연맹, 사업주의 대표 조직, 관련 사회 조직과 협의한 후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에 의해 발표되어야 하고, 근로환경, 장비, 기술의 변화에 따라가도록 수정, 보충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한다.

2. 매년, 사업주는 업무상 질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보고서와 통계를 성의 국가보건 관리 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해당 기관은 이를 보건부에 보고해야 한다.

3. 매년, 보건부는 업무상 질병의 현황과 업무상 질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보고서와 통계를 노동보훈사회부에 송부해야 하고, 노동보훈사회부는 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건부는 업무상 질병에 관한 데이터의 수집, 저장, 집계, 제공, 발표 및 평가를 체계화하고 안내해야 한다. 업무상 질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및 관리를 체계화해야 한다. 업무상 질병의 조사를 체계화해야 한다.

제2절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제38조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사업주는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피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1.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을 위한 응급처치와 응급치료를 신속하게 수행해야 한다.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피해자들을 위해 응급처치, 응급치료 및 치료비용을 선불로 지급해야 한다.
2.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피해자들을 위해 응급처치에서 치료 완료까지 발생한 모든 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지불해야 한다.
 - a) 사업주의 부담 책임을 수행하고, 건강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 근로자에 의해 부담되지 않는 서비스의 전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b) 노동력이 5% 미만으로 상실된 것으로 보여, 사업주에 의해 의료진단위원회로 보내진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력상실도 판정을 위한 의료진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c) 근로자가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한 모든 의료비는 사업주가 지불해야 한다.
3.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에게 병가 및 직업재활 기간 동안 급여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4.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닌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근로자와 업무

상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보상해야 한다.

- a) 근로자의 노동력이 5.0%-10% 상실된 경우 적어도 1.5개월분의 급여. 근로자의 노동력이 1.0% 상실될 때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0.4개월분의 급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근로자의 노동력이 11%- 80% 상실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 b) 근로자의 노동력이 81% 이상 상실된 경우나 근로자가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가족에게 적어도 30개월분의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5. 근로자 과실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력상실도에 따라 이 조의 제4항에 규정된 금액의 최소 40%에 해당하는 지급액을 받아야 한다.
 6.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는 이들이 법률에 규정된 의료, 건강 회복 및 직업재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력상실도를 판정하기 위해 의료진단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7. 의료진단위원회에서 노동력상실도에 대한 결론을 발표한 날 또는 치명적인 산업재해의 경우는 산업재해 조사팀에서 산업재해 조사록을 발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과 지급액을 제공해야 한다.
 8.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의료진단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료 및 직업재활에서 복귀한 후 (이들이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 이들에게 적절한 업무를 할당해야 한다.
 9. 근로자가 이 장의 제3절에 규정된 대로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보험기금으로부터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문서를 준비한다.
 10. 이 조의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결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불되는 보상금, 지급액, 급여의 기준이 되는 급여는 노동법에 규정된 임금률, 수당 및 기타 지불금을 포함한다.
 11. 노동보훈사회부는 이 조의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정해야 한다.

제39조 특별한 산업재해의 경우, 보상금과 지급액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1. 근로자가 그들의 사업소, 기업, 조직, 협동조합 장소 외에서 작업 수행 중이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르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가 다른 사람에 의해 발생했거나 사고를 발생시킨 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는 이 법의 제38조 제4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2. 근로자가 합리적인 시간 및 경로 내에서 사업장에 출퇴근하는 길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가 다른 사람에 의해 발생했거나 사고를 발생시킨 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는 이 법의 제38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3. 사업주가 보험회사에 산업재해 피해자들을 위한 사고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러한 피해자들은 보험회사와 체결된 계약에 따라 보상금과 지급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산업재해 피해자들을 위해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이 이 법의 제38조 제4항과 제5항에 정의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수령하는 총 금액이 이 법의 제38조 제4항과 제5항에 정해져 있는 보상금 및 지급액 이상이 되도록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4. 사업주가 사회보험법에 의해 규정된 사회보험의 의무 가입자인 근로자들을 위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리면, 이 법의 제38조에 규정된 보상금과 지급액 이외에, 사업주는 또한 이 장의 제3절에 규정된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지급은 관련 당사자들이 합의한 대로 일시금으로나 매년 이루어져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요청대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5.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이 조의 세부사항을 정해야 한다.

제40조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산업재해 지급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의 상황

1. 다음 경우, 산업재해의 피해자는 이 법의 제38조와 제39조에 정해진 대로 사업주로부터 지급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 a)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개인적 다툼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업무/작업의

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

b) 피해자의 의도적 행위의 결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c) 약물 및 기타 마취성 약물의 불법적 사용의 결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이 조의 세부사항을 정해야 한다.

제3절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 보상

제41조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보험기금으로부터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피해자에게 보험 보상을 제공하는 원칙

1.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보험기금은 사회보험기금의 구성요소이다. 이 기금에 보험료의 납입, 이 기금으로부터 받는 혜택, 이 기금의 관리는 이 법과 사회보험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월급여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고, 사업주가 지불해야 한다.
3.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률과 지급액은 노동력상실도, 보험료, 그리고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보험기금에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에 따라 계산된다.
4.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보험기금 가입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은 간단하고 편리하며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모든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제42조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보험기금의 사용

1. 이 법의 제45조와 제46조에 정의된 적격 사건에 대해 산업재해에 의해 발생된 상해 및 질병과 질병의 의료진단을 위한 비용의 지급, 이 법의 제47조 제1항 b)와 제3항에 규정된 대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노동력상실도 판정을 위한 의료진단을 받고, 평가 결과 그 근로자가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에 대한 증가된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나타나는 경우, 그 의료진단의 비용의 지급.

2. 일시금 지급액, 월간 지급액, 원호 지급액
3. 보조장치 및 정형외과 장치 비용
4. 휴가 및 회복 비용
5.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위험성 방지 및 공유 비용
6.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피해자가 업무에 복귀할 때 업무/직업을 변경하도록 지원하는 비용
7. 사회보험법에 규정된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보험의 관리 비용
8. 근로를 중단하고 월간 지급액을 지급받는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피해자를 위한 건강보험료 납부

제43조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보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대상

1. 이 항에 규정된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대상은 제2조의 제1항의 a, b, c, d, dd, e 그리고 h에 정의된 의무적 사회보험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와 사회보험법 제2조 제3항에 정의된 사업주이다.
2. 근로자가 여러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가 의무적 사회보험의 대상이라면, 사업주는 각자의 근로계약에 따라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에 대해 근로자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자는 정부가 정하는 보험료 지급과 보상 원칙에 따라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 보상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제44조 보험료율과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보험기금을 형성하는 자원

1. 사업주는 매월 이 법의 제43조에 정해진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납입의 기준으로, 급여 기금의 최대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보험기금에 납입해야 한다.
2.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보험기금은 다음과 같은 자원으로 형성된다.
 - a) 이 조의 제1항에 규정된 사업주의 분담금

b) 사회보험법 제90조와 제91조에 규정된 기금으로 수행한 투자 활동에서 발생한 이익

c) 기타 합법적인 수입

3.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보험기금의 잔고를 유지하는 능력에 따라, 정부는 이 조의 제1항에 규정된 기금에 납입해야 할 보험료율의 세부사항을 정해야 한다.

제45조 산업재해 보상금 수령 조건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1. 다음 경우에 사고를 당한 경우

a) 사업장에서 업무 시간 중, 사업장에서 개인적인 일을 하는 중이었더라도 노동법과 생산/사업소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근무 시간(예: 근무 시간 사이의 휴식시간, 근무교대 간의 식사시간, 식사시간, 생리 휴식시간, 샤워 시간, 수유 시간, 화장실 사용 시간) 등에 사고를 당한 경우

b) 사업장 밖에서 또는 근무시간 외에 사업주 또는 사업주에 의해 서면으로 승인받은 사람에 의해 요청된 작업을 수행하는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

c) 합리적인 시간과 경로 내에서 사업장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경우

2. 이 조의 제1항에 규정된 사고의 결과로 노동력이 5% 이상 상실된 경우

3. 근로자는 이 법의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사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보험기금에 의해 지급되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제46조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금 수령 조건

1.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a) 이 법의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부처의 장관에 의해 발표된 업무상 질병 목록

록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고통받는 경우

b) 이 항의 a)에 규정된 질병으로 인해 노동력이 5% 이상 상실된 경우

2. 이 법의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부처의 장관에 의해 발표된 업무상 질병 목록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의 위험성이 있는 직무/직업에서 퇴직하거나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게 된 후, 근로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된 경우, 보상액 검토를 위한 의료진단이 정부가 정한 대로 수행되어야 한다.

제47조 노동력상실도에 대한 평가

1.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피해자는 다음 경우에 노동력상실도를 판정하기 위해 검사 및 재검사해야 한다.

a) 최초로 상해 및 질병 치료를 완료하고 난 후, 상해 및 질병 후유증이 여전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때

b) 재발하는 상해 및 질병에 대한 치료를 완료한 후

c) 보건부 장관이 정한 대로 완치될 수 없는 상해 또는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근로자는 치료 과정 전이나 중에 의료진단 절차를 거칠 수 있다.

2. 근로자는 다음 경우에 노동력상실도를 결정하기 위해 종합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a)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모두로 고통받는 경우

b) 여러 번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c) 다수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3. 이 조의 제1항에 명시된 근로자는 노동력상실도에 대한 의료진단위원회의 이전의 결론의 발표로부터 24개월 후에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의학적 재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근로자가 그들의 건강을 급속하게 악화시키는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의료진단이 보건부 장관이 정한 것보다 일찍 이루어져야 한다.

제48조 일시금 지급액

1. 노동력이 5%-30% 상실된 근로자는 일시금 지급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일시금 지급액 비율은 다음과 같다.
 - a) 노동력이 5% 상실된 근로자는 기본 임금률의 5배에 해당하는 지급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노동력이 1.0%씩 상실될 때마다 기본 임금률의 0.5배를 더 지급받아야 한다.
 - b) 이 항의 a)에 규정된 지급액 이외에, 근로자는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보험기금에 보험료를 납입한 연수에 의해 계산된 추가 지급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그 지급액은 보험료 납입의 기준이 되는 급여의 0.5개월분이어야 한다.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보험기금에 보험료를 1년씩 더 납부했을 때마다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당한 달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진단받은 달 이전 달에 이 기금에 납부한 0.3개월분의 급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근로자가 이 기금에 보험료를 납부한 첫 달에 산업재해를 당하거나 간헐적인 근로 기간으로부터 업무에 복귀한 경우, 이 지급액 계산에 사용되는 급여는 그 달의 급여이다.
3. 근로자가 의학적 재평가 및 종합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른 보상률에서 이익을 얻는 경우,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보상금 계산의 세 부사항을 정해야 한다.

제49조 월간 지급액

1. 노동력이 31% 이상 상실된 근로자는 월간 지급액을 수령해야 한다.
2. 월간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a) 노동력이 31% 상실된 경우, 지급액은 기본 임금률의 30%여야 한다. 노동력이 1%씩 더 상실될 때마다 근로자는 기본 임금률의 2%를 더 수령해야 한다.
 - b) 이 항의 a)에 규정된 지급액 이외에, 근로자는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보험기금에 보험료를 납입한 연수에 의해 계산된 추가 지급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그 지급액은 보험료의 기준이 된 0.5개월분의 급여여야 한다.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보험기금에 보험료를 1년씩 더 납부했을 때마다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당한 달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진단받은 달 이전 달에 이 기금에 납부한 0.3개월분의 급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근로자가 이 기금에 보험료를 납부한 첫 달에 산업재해를 당하거나 간헐적인 근로 기간으로부터 업무에 복귀한 경우, 이 지급액 계산에 사용되는 급여는 그 달의 급여이다.

3.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에 대한 월간 지급액과 원호 지급액의 지급의 중단 및 계속은 사회보험법의 제64조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에 대한 월간 지급액 지급의 계속을 확정하기 위한 문서 및 명령은 사회보험법 제113조 및 제114조를 준수해야 한다. 사회보험법 제64조 제1항의 c)에 규정된 보상금의 지급 중단 시, 사회보험기관은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들어야 한다. 보상금 지급을 종료하는 결정은 관할 국가기관의 결론 및 결정에 따라야 한다.
4. 산업재해의 월간 지급액 수급자가 베트남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새 거주지에서 지급액을 수령하기를 원하는 경우, 지급액을 제공해 주는 기존 사회보험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회보험기관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신청서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는 서면으로 답변하고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5.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에 대한 월간 지급액 수급자가 다른 국가로 이사를 가는 경우, 일시금 지급액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일시금 지급액 금액은 기존 월간 지급액의 3개월분이다. 일시금 지급액 신청을 위한 문서와 일시금 지급액 확정 명령은 사회보험법 제109조 제2항과 제3항 및 제110조 제4항을 준수해야 한다.
6.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월간 지급액 및 원호 지급액은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제50조 지급액 수령 기간

1. 이 법의 제48조, 제49조 및 제52조에 규정된 지급액을 수령하는 기간은 근로자가 치료를 마치고 병원에서 퇴원한 달 또는 근로자가 입원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는 의료진단위원회의 결론이 발표된 달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이 법의 제47조 제2항에 규정된 대로 노동력상실도를 결정하기 위해 종합 평가를 받는 경우, 지급액을 수령하는 기간은 근로자가 마지막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에 대해 치료를 마치고 병원에서 퇴원한 달 또는 근로자가 입원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는 의료진단위원회의 결론이 발표된 달로부터 시작된다.

2. 근로자가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을 당했지만 치료를 마치고 병원에서 퇴원한 때를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에 대한 지급액을 수령하는 기간은 의료진단위원회의 결론이 발표된 달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HIV/AIDS에 걸린 경우, 지급액을 수령하는 기간은 그들이 산업재해로 인해 HIV/AIDS에 걸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수령한 달로부터 계산한다.
3. 근로자가 이 법의 제47조 제1항의 b)와 제2항에 정의된 대로 노동력상실도의 판정을 위해 의료진단을 받는 경우, 새로운 지급액을 수령하는 기간은 의료진단위원회의 결론이 발표된 달로부터 계산한다.

제51조 보조장치 및 정형외과 장치

1. 신체 기능에 상해를 초래하는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피해자는 상해 및 질병의 심각성에 따라 그리고 전문적 및 기술적 요구사항과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시설, 정형외과, 재활 시설에 의해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조장치 및 정형외과 장치를 구매할 금전을 제공받아야 한다.
2.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보조장치 및 정형외과 장치의 종류와 보조장치 및 정형외과 장치의 사용 기간 및 구입에 사용되는 금액, 이행을 위한 문서와 명령의 세부사항을 정해야 한다.

제52조 원호 지급액

척수마비, 양안의 실명, 양 팔·다리의 절단이나 마비 또는 정신질환으로 노동력의 81% 이상을 상실한 근로자는 이 법의 제49조에 규정된 지급액 이외에 기본 임금률에 해당하는 원호 지급액을 매월 수령할 권리가 있다.

제53조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일시금 지급액

다음 경우, 근로자의 가족은 근로자가 사망한 달의 기본 임금률의 36배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액과 사회보험법에 정해진 사망 급부금을 지급받는다.

1. 근로자가 작업과정 중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2. 근로자가 최초 치료기간 중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3. 근로자가 노동력상실도의 판정을 위한 의료진단을 수령하기 전에 상해 및 질병의 치료 중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 급부금의 수령을 위한 문서는 사회보험법 제111조의 제1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54조 상해 및 질병의 치료 후 휴가와 회복

1. 산업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를 완료한 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근로자는 직장 복귀 후 30일 이내에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을 얻은 각 기간에 대해 5-10일간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근로자가 업무 복귀 후 30일 이내에 의료진단위원회로부터 노동력상실도에 대해 결론을 받지 못한 경우, 의료진단위원회가 그들의 노동력상실도가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이 조의 제2항에 정의된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후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휴가 및 회복을 여전히 누려야 한다.

2. 이 조의 제1항에 규정된 휴가 및 회복의 일수는 사업주와 사업소의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사업소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단독으로 정해야 한다. 휴가 및 회복을 위한 시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a) 노동력이 51% 이상 상실된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피해자는 최대 10일
 - b) 노동력이 31%-50% 상실된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피해자는 최대 7일
 - c) 노동력이 15%-30% 상실된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피해자는 최대 5일
3. 이 조의 제1항에 규정된 근로자는 기본 임금률의 30%에 해당하는 일일 지급액을 수령받아야 한다.

제55조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피해자가 업무에 복귀할 때 업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1.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피해자가 이 법의 제38조 제8항에 규정된 대로 사업주에 의해 새로운 업무를 할당받았고 이 새 업무가 훈련을 필요로 할 때, 이러한 근로자는 수업료를 충당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재정 지원은 총 수업료의 50%와 기본 임금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근로자당 2회 이하여야 한다. 매년, 근로자는 이러한 종류의 재정 지원을 1회 받을 수 있다.

제56조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위험성의 예방 및 공유를 위한 지원

1. 매년,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보험기금은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위험성의 예방 및 공유의 지원을 위해 수입의 최대 10%를 유보해 두어야 한다.
2. 지원할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위험성의 예방 및 공유와 관련되는 활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건강검진 및 업무상 질병의 치료
 - b) 직업재활
 - c) 사회보험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재조사
 - d)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보험제도 가입자 및 이 법의 제14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사람들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훈련
3. 이 조의 제2항 a)와 b)에 정의된 활동을 위한 지원에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기금에 의해 지급된 비용 또는 이 법의 제38조 제2항에 규정된 대로 사업주에 의해 지급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4. 정부는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보험기금의 잔고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법의 제55조와 제5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원 조건, 필요한 문서, 재정 지원을, 기간, 명령, 절차, 지원을 결정하는 관할 기관,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조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해야 한다.

제57조 산업재해 지급액 수령을 위한 문서

1. 사회보험기록부
2. 퇴원 시트 또는 산업재해에 대한 입원 치료 종료 후 의무기록 사본
3. 노동력상실도에 대해 결론을 내린 의료진단위원회의 기록부
4. 노동보훈사회부와 협의한 후 베트남 사회보장청에서 발표한 양식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요청서

제58조 업무상 질병 지급액 수령을 위한 문서

1. 사회보험기록부
2. 퇴원 시트 또는 업무상 질병 치료 종료 후 의무기록 사본. 근로자가 의료 시설에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는 업무상 질병 검사 시트를 보여야 한다.
3. 노동력상실도에 대해 결론을 내린 의료진단위원회의 기록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HIV/AIDS에 걸린 경우는 근로자는 대신 산업재해로 인해 HIV/AIDS에 걸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노동보훈사회부와 협의한 후 베트남 사회보장청에서 발표한 양식으로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 요청서

제59조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 보상의 해결

1. 사업주는 이 법의 제57조와 제58조에 규정된 대로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 요구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사회보험기관에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사회보험기관은 적격한 관련 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업무일 이내에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 보상을 해결해야 한다. 거부의 경우에는 그 이유가 명시된 답변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60조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후 휴가 및 회복 지급액의 처리

1. 사업주는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에 대해 보험 보상을 받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근로자들의 명단을 작성해 이를 이 법의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대

로 근로자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사회보험기관은 명단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들을 위한 휴가 및 회복 지급액의 처리와 그들의 사업소에 해당 금액을 송금할 책임이 있다. 거부의 경우에는 그 이유가 명시된 답변서를 제공해야 한다.
3. 사업주는 사회보험기관의 송금일로부터 5업무일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지급액을 지급해야 한다.

제61조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 보상의 지연 처리

1.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 보상의 처리가 이 법의 제59조와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이유가 명시된 문서가 발행되어야 한다.
2. 수급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에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 보상의 지연 처리 및 지급액의 지연 지급의 경우, 지연 처리가 피해자 또는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의 과실 때문이 아닌 한, 법률에 규정된 대로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제62조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 보상의 처리를 위해 노동력상실도를 판정하기 위한 의료진단을 위한 관련 문서와 의료진단의 명령

1. 보상을 위해 노동력상실도를 판정하기 위한 의료진단을 위한 관련 문서와 의료진단의 명령은 보건부 장관이 정해야 한다.
2. 노동력상실도 판정을 위한 의료진단은 정확하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진단위원회가 법률에 따라 평가 결과의 정확성에 책임이 있다.

제IV장 특별한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의 보장

제63조 여성 근로자, 미성년 근로자 및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여성 근로자, 미성년 근로자 및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은

노동법, 장애인법 및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64조 과중, 유독 또는 유해한 업무에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조건

1. 사업주는 다음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는 경우에만 고령 근로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과중, 유독, 유해한 업무 또는 매우 과중, 유독, 유해한 업무에 고령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 a) 고령 근로자가 경험이 많고, 만 15년 이상 경력의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경우. 직업적인 인증서가 있거나 법률에 의해 장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 b) 고령 근로자가 보건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한 후 발표한 건강 기준에 따라 과중, 유독, 유해한 업무를 할 수 있을만큼 충분히 건강해야 한다.
 - c) 고용이 고령 근로자당 5년 이내로 이루어져야 한다.
 - d) 고령 근로자가 고령이 아닌 적어도 한 명의 근로자와 함께 일해야 한다.
- dd) 고령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일해야 한다.
2. 정부는 이 조의 세부사항을 정해야 한다.

제65조 아웃소싱의 경우 산업안전보건

1. 수탁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 a) 외주 근로자의 합법적인 산업안전보건 권리 및 이익을 보장하는 것에 관해 위탁자와 협상한다. 외주 근로자의 합법적인 산업안전보건 권리 및 이익은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업무를 하거나,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업무를 하는 위탁자의 근로자의 합법적인 산업안전보건 권리 및 이익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아웃소싱 계약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노동법과 이 법에 규정된 대로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b) 위탁자와 협력하여 위탁자가 외주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보장하는지 확인한다. 위탁자가 서명한 아웃소싱 계약서에 기재된 산업안전보건 이행에 관한 약속을 불이행할 경우, 수탁자는 외주 근로자의 모든 권리와 이익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 c) 외주 근로자 관련 산업안전보건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이 법의 제36조와 제37조에 규정된 대로 산업재해와 질병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위탁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 a) 아웃소싱 계약서의 약속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 외주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을 보장하고, 내부 근로자에 대한 처우와 비교해 외주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b) 외주 근로자가 산업재해 또는 산업안전보건 실패를 초래하는 기술적 사건으로 고통을 받을 때, 위탁자는 피해자에 대해 즉시 응급처치와 응급치료를 실시하고, 동시에 수탁자에게 통지하며, 이 법의 제34조와 제35조에 규정된 대로 사건을 신고 및 조사해야 한다.
- c) 수탁자가 외주 근로자에 대해 그들이 할당받은 직무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제공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규정된 대로 외주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훈련을 준비해야 한다. 반기별 및 매년 외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해 이를 수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 d) 산업재해 조사에 있어 수탁자와 협력하고 외주 근로자 관련 산업안전보건 기록을 보관한다.

3. 외주 근로자는 위탁자가 발표한 산업안전보건 규정, 절차 및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4. 정부는 아웃소싱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의 세부사항을 정해야 한다. 외주 근로자에 대한 수탁자와 위탁자의 책임, 외주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의 보장은 노동법과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66조 사업장에서 다수의 사업주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다수의 사업주 아래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러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발주자는 이러한 사업주들이 각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명확하게 정하는 문서를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 산업안전보건 조사를 하는 직원을 지정해야 한다.

제67조 해외취업 베트남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1. 이 조에 규정된 해외 근무 베트남 근로자에는 사업주에 의해 해외에서 근무하도록 배정된 사람들과 계약에 따라 외국에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대로 계약에 따라 외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2. 사업주는 외국의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
 - a) 산업안전보건 조치,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 보상, 이 법에 정해진 대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외국의 규정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경우는 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 b)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조사에 있어 외국의 관할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 c) 치명적인 산업재해 및 심각한 산업재해의 경우, 산업재해 관련 문서와 자료가 사업주의 본사가 소재한 베트남의 성급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3. 해외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근로자들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조인한 국제협정/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베트남 법과 외국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68조 가사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1. 사업주는 가사일에 사용되는 가정 내 기계, 설비, 용품, 소방장비의 사용에 대해 가사 근로자에게 안내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가사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보장하기 위한 기타 방법을 구현해야 한다.
2. 가사 근로자는 기계, 용품, 설비, 소방 장비의 사용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3.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가사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제69조 재택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1. 근로자는 사업주가 그들에게 할당한 업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재택근무에 관해 사업주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재택근무 중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택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은 이를 즉시 사업주에 통지해야 한다.

산업재해의 피해자가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보험에 가입된 경우, 이들은 이 법에 규정된 대로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의 피해자가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업주는 이 법의 제38조의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및 제10항에 규정된 대로 이 법의 보상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

3.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재택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조건을 확인하고, 재택 근로자와 체결한 계약의 약속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이 법의 제36조에 규정된 대로 산업재해에 대한 일반 보고서를 통해 재택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함께 보고해야 한다.

제70조 학생, 견습생, 인턴,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1. 교육 및 직업훈련기관은 이 법의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및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대로 실습 및 직업훈련 중인 학생과 견습생에 대해 근로자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 조건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2. 사업주는 피훈련자, 견습생,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의 경우를 포함하여 이 법에 규정된 근로자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3. 실습, 직업 훈련 및 견습 기간 중 학생과 견습생은 교육 및 직업 훈련 기관의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학생이 실습 중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정부에서 정한 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V장 생산/사업소에서 산업안전보건의 보장

제71조 생산/사업소에서 산업안전보건의 이행

1. 산업안전보건의 이행을 조직할 때, 생산/사업소는 이 법의 제I장, 제II장, 제III장, 제IV장과 이 장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경제구역,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첨단산업구역의 관리자는 특별법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그들이 관리하는 생산/사업소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의 체계화를 지시하고, 산업안전보건 조사 활동의 조직에 협력하고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관할 국가 노동 기관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3. 근로자의 규모와 특성,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위험성, 근로조건에 따라, 정부는 근로조건, 조직 구조, 장비, 기능, 임무와 관련 특별법의 기타 규정에 따라 이 조의 제2항에 정의된 기타 사업소, 경제구역,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첨단산업구역의 관리자에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의 세부사항을 정해야 한다.

제72조 산업안전보건 부서

1. 근로자의 규모와 특성,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위험성, 근로조건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소에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을 지정하거나 산업안전보건 부서를 설립해야 한다.

정부는 이 조의 세부사항을 정해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또는 산업안전보건 부서는 생산/사업소에서 산업안전보건 이행에 관해 사업주를 돕고 사업주에게 상담을 제공할 책임이 있고,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산업안전보건 규정, 절차 및 조치를 개발한다. 사업소에서 소방과 화재 예방을 보장한다.
 - b)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모니터링한다. 위험성을 평가하고 긴급구조 계획을 수립한다.

- c) 엄격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적용되는 기계, 장비, 재료의 신고 및 평가를 개발하고 모니터링한다.
 - d)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정보, 소통, 훈련 활동을 조직한다. 근로자를 위한 응급처치 및 응급치료, 업무상 질병의 예방 및 관리를 체계화한다.
 - dd) 산업안전보건 자체 점검을 조직한다. 법률에 따라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보건 실패를 초래하는 기술적 사건을 조사한다.
 - e) 유해요인과 독성요인의 모니터링과 관리를 관장하고 보건 부서와 협력한다.
 - g) 조사팀, 심사팀, 각 부서 및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권고사항을 통합하고 사업주에게 이러한 권고사항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
 - h) 산업안전보건 대표자의 업무 수행을 안내하는 데 있어 사업소의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와 협력한다.
 - i)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대회, 칭찬/보상, 징계 및 통계와 보고서의 작성을 준비한다.
3. 산업안전보건 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 부서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a)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산업재해의 위험성을 인지하면 생산 부서의 장에게 조업중단 또는 (비상 상황의 경우는) 임시조업중단을 명령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동시에 사업주에게 이를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b)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용 기한이 만료된 기계, 장비의 가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 c) 법률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주에 의해 훈련 및 재훈련 받으러 보내질 수 있다.
4.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은 사업소의 생산 및 사업 활동에 대해 기술적인 지식,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5. 생산/사업소에 이 조의 제1항과 제4항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도 산업안전보건 부서도 없을 때, 생산/사업소는 이 조의 제2항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관련 능력을 가진 기관을 고용해야 한다.

제73조 보건 부서

1. 근로자의 규모와 특성,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위험성, 근로조건에 따라, 생산/사업소는 근로자의 건강을 돌보고 관리하는 보건 근로자를 지정하거나 보건 부서를 설립해야 한다.

정부는 이 항의 세부사항을 정해야 한다.

2. 보건 근로자 또는 보건 부서는 사업주를 돕고 사업주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직접 관리할 책임이 있고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산업재해의 피해자들을 위한 응급처치 및 응급치료, 필수 의약품과 긴급구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을 개발한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 훈련을 조직한다.
 - b) 건강검진, 업무상 질병의 발견을 위한 의학적 검사,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경우, 노동력상실도를 판정하기 위한 의료진단, 회복 및 직업재활,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한 조치에 대한 상담을 계획하고 준비한다. 근로자의 건강에 적합한 직무를 계획하고 할당한다.
 - c) 사업장에서 건강검진 및 일반 질병 치료를 조직화하고 법률에 규정된 대로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 실패를 초래하는 기술적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응급처치, 응급의료를 제공한다.
 - d)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상 질병의 예방, 건강 증진에 관한 정보를 알리고 보급한다. 사업장에서 위생 규정의 이행을 조사하고 유행병의 예방을 체계화하고 근로자를 위한 식품 안전을 보장한다. 법률에 규정된 대로 현물급여를 제공한다.
 - dd)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독성요인 평가를 위해 근로환경 모니터링을 준비한다. 근로자와 업무상 질병 피해자(있는 경우)의 건강 기록을 관리한다.
 - e) 이 법의 제72조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작업 수행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부서

와 협력한다.

3. 보건 근로자와 보건 부서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a) 근로자에게 해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반이나 위험성의 징후를 발견한 경우, 생산부서의 장에게 조업중단 또는 (비상 상황의 경우는) 임시조업중단을 명령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동시에 사업주에게 상황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응급처치와 응급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관리한다. 사업소에서 응급처치와 응급치료에 대해 근로자에게 안내한다.
- b) 산업안전보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물질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 c) 전문적인 지식을 향상시키고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 보건시설이나 보건 당국에서 개최하는 회의나 세미나에 사업주에 의해 보내질 수 있다.

4. 사업소의 보건 근로자는 산업보건 분야에 대한 배경과 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5. 생산/사업소에 이 조의 제1항과 제4항에 규정된 보건 근로자도 보건 부서도 없을 때, 생산/사업소는 이 조의 제2항에 규정된 대로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건부 장관이 정하는 자격 있는 보건시설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74조 산업안전보건 대표자

- 1. 생산/사업소의 각 생산팀마다 업무 시간 중 적어도 한 명의 파트타임 산업안전보건 대표자가 있어야 한다. 사업주는 사업소의 노동조합 집행위원회가 있는 경우, 이 집행위원회와 협의한 후 산업안전보건 대표자 네트워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결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 2. 산업안전보건 대표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이 있고, 자발적이며, 헌신적이고,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엄격하게 따르며, 자신의 팀의 근로자들에 의해 선출된 근로자여야 한다.
- 3. 산업안전보건 대표자는 산업안전보건 대표자 네트워크의 운영 규정을 따르면서, 사업소의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의 관리와 지도하에서 활동한다. 업무 이행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또는 산업안전보건 부서, 보건 근로자 또는 보건 부서와 기술적으로 협력한다.

4. 산업안전보건 대표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 a) 팀, 그룹, 작업장의 모든 사람에게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안전 설비와 개인보호구를 보관하도록 촉구하고, 상기시키고 지시해야 한다. 팀, 그룹, 작업장의 장에게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준수하도록 상기시킨다.
- b) 산업안전보건 표준, 절차 및 규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산업안전보건과 관련 되는 범법 및 위반 행위,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기계, 장비, 용품, 물질 및 사업장을 찾아내야 한다.
- c) 산업안전보건 계획의 수립과 팀 내 신입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조치를 지시하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
- d) 팀장 또는 감독자에게 노동 보호 및 산업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규정을 완벽하게 이행하고,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기계, 장비, 용품, 물질 및 사업장을 적시에 해결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 dd) 사업장에서 사업주에게 보고되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 위반 또는 엄격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적용되는 기계, 장비, 용품 및 물질이 안전하지 못한 상황인 것을 발견했을 때 노동조합 또는 근로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산업안전보건 대표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a)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가 사용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b) 산업안전보건 대표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업무 시간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시간에 대해 보수를 받으며, 이러한 추가 업무에 대해 수당을 받는다.

산업안전보건 대표자의 추가 임무에 대한 수당률은 사업주와 사업소의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에 의해 결정되고, 산업안전보건 대표자 네트워크의 운영 규정에 기재되어야 한다.

- c) 사건/산업재해를 일으킬 당면한 위험성을 인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 조치

이행을 위해 팀의 근로자들에게 업무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에 대해 책임이 있다.

- d) 전문적인 지식과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과 재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

제75조 산업안전보건 협의회의 설립

1. 근로자의 규모와 특성,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위험성, 근로조건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소에 산업안전보건 협의회를 설립해야 한다.

정부는 이 항의 세부사항을 정해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 a) 생산/사업소에서 산업안전보건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 절차, 계획 및 조치를 개발하는 데 있어 사업주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사업주와 협력해야 한다.

- b) 매년, 정보 공유, 이해 증진, 근로자를 위한 평등하고 안전한 근로조건의 추진을 위해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간 대화를 조직해야 한다. 생산/사업소에서 산업안전보건 정책과 법률 이행의 효과를 증진시켜야 한다.

- c) 생산/사업소에서 산업안전보건 활동의 이행을 조사해야 한다.

- c) 안전하지 못한 상황의 위험성을 발견한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a) 사업주 대표자가 산업안전보건 협의회 회장이 된다.

- b) 사업소의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소에서 근로자들의 대표자가 산업안전보건 협의회 부회장이 된다.

- c) 사업소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 협의회의 상임위원 겸 서기가 된다.

d) 사업소의 보건 근로자

dd) 기타 관련 위원

산업안전보건 협의회에는 양성평등원칙과 사업소의 실제 상황에 따라 일정 비율의 여성 위원이 있어야 한다.

제76조 산업안전보건 계획

1. 사업주는 매년 산업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조직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계획에 추가되어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 계획의 수립 시, 다음을 토대로 사업소의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a)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위험성의 평가, 유해요인, 독성요인 및 긴급구조 계획의 관리
 - b) 전년도 산업안전보건 활동의 이행 결과
 - c) 각 연도의 근로자의 생산 및 사업 업무, 방향, 계획 및 상황
 - d) 근로자, 노동조합, 조사 및 검사팀의 권고사항
3. 산업안전보건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기술적인 산업안전과 소방 조치
 - b) 산업보건에 대한 기술적 조치, 독성요인의 예방 및 관리, 근로조건의 개선
 - c) 개인보호구의 제공
 - d)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
 - d)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정보, 소통, 교육 및 훈련

제77조 산업안전보건 위험성 평가

1. 산업안전보건 위험성 평가는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사업장에서 위험성과 유해요인 및 독성요인의 피해의 분석 및 발견을 의미한다.
2. 사업주는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를 조직하고,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및 필요할 때 업무 시작 전과 작업과정 중에 산업안전보건 위험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3.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위험성이 높은 분야 및 직업에서 산업안전보건 위험성의 평가는 의무적이어야 하고 업무 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4.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보건부 장관과 협의한 후 이 조의 제2항과 제3항의 세부사항을 정해야 한다.

제78조 긴급구조 계획

1.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위험성과 법적 체계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긴급구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긴급구조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위험한 구역으로부터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것에 대한 계획
 - b) 피해자에 대한 긴급 및 응급처치
 - c) 사고의 예방 및 사고의 결과 극복을 위한 조치
 - d) 구조 설비
 - dd) 현장의 구조팀, 외부 구조팀과 협력할 계획, 훈련 계획
3. 긴급구조 계획 승인의 순서, 절차 및 능력은 법률에 정해진 대로 수행되어야 한다.

제79조 긴급구조팀의 설립

1. 유해요인과 독성요인에 노출되는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법률에 정해진 대로 상근 또는 비상근 긴급구조팀을 설립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응급처치, 응급치료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2. 긴급구조팀은 신속한 구조, 응급처치, 응급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기술장비와 의료기기를 제공받고 훈련을 받아야 한다.
3. 보건부 장관은 사업장에서 긴급구조팀의 구성, 장비, 훈련의 세부사항을 정해야 한다.

제80조 산업안전보건의 자체 점검

1. 사업주는 사업소에서 산업안전보건의 정기 및 특별 자체 점검의 이행을 계획하고 조직해야 한다.
2. 자체 점검의 내용, 형태, 기간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사업소의 근로자의 규모와 특성,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위험성, 근로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3.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보건부 장관과 협의한 후 이 조의 세부사항을 정해야 한다.

제81조 산업안전보건 통계 및 보고서

1. 매년, 사업주는 다음과 같이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통계 및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a) 특별법에 달리 정한 바 없는 한, 산업안전보건 보고서를 성의 국가노동관리 기관 및 성의 국가 보건 관리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b) 이 법의 제36조와 제37조에 규정된 대로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심각한 산업안전보건 실패를 초래하는 기술적 사건에 대한 통계 및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보건부 장관과 협의한 후 이 조의 제1항 a)의 세부사항을 정해야 한다.

제VI장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국가적 관리

제82조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내용

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적 규범 문서를 공표하고 그 이행을 체계화한다. 각각의 권한 범위 내에서 국가 산업안전보건 표준, 기술 규정, 그리고 지역적 산업안전보건 기술 규정을 개발하고 공표하거나 발표한다.
2. 산업안전보건 법률의 소통, 보급 및 교육을 실시한다.
3.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에 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문서화하고 제공한다. 국가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과 기록을 개발한다.
4.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기관의 조직과 운영을 관리한다.
5.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연구와 과학기술의 적용을 체계화하고 수행한다.
6.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고소, 고발과 산업안전보건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한다.
7.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훈련과 재훈련을 제공한다.
8.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제83조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국가적 관리 책임

1.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국가적 관리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2. 노동보훈사회부는 정부에 앞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국가적 관리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3. 부처와 부처급 기관은 각각의 직무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국가적 관리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4. 모든 수준의 인민위원회는 각각의 직무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국가적 관리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제84조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국가적 관리 책임

1. 산업안전보건 법률, 정책, 계획의 수립과 이를 발표를 위해 관할 국가기관에 제출하거나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발표 및 이행을 준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국가 산업안전보건 기록부를 작성한다.
2. 이 법의 제28조에 규정된 대로 엄격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적용되는 기계, 장비, 재료의 목록을 발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훈련 활동에 대한 국가적 관리와 엄격한 산업안전 기준이 적용되는 기계, 장비, 용품, 물질의 평가를 주도해야 한다.
3. 이 법의 제87조에 정의된 국가 산업안전보건 표준과 기술 규정을 개발하거나 권한 범위 내에서 개발에 참여한다.
4. 산업안전보건 정보를 모니터링, 집계, 제공한다. 통계 법률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통계를 집계한다.
5. 산업안전보건 법률의 소통, 보급, 교육의 실시를 주도한다. 산업안전보건 실패를 초래하는 기술적 사건,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을 예방해야 한다.
6.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보험 관련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에 해결책 결정을 요구한다.
7. 산업안전보건 위반 행위를 조사, 처리해야 한다.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보건 실패를 초래하는 기술적 사건을 조사하고 조사에 협력해야 한다. 범죄의 징후가 있는 산업재해를 조사 및 처리할 것을公安부와 최고인민검찰원에 제안한다.
8.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85조 보건부 장관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국가적 관리 책임

1. 근로환경 모니터링에 대한 법적 규범 문서의 개발 및 이를 발표를 위해 관할 국가기관에 제출하거나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발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사업장에서 독성요인을 평가, 통제, 관리한다. 근로환경 모니터링을 관리하고 조직한다.

2. 근로환경에서 산업보건과 관련되는 국가 산업안전보건 표준과 기술 규정을 개발해야 한다. 이 법의 제87조 제5항에 규정된 대로 권한 범위 내에서 산업보건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3. 산업보건의 관리와 업무상 질병의 예방을 안내해야 한다.
4. 건강검진, 업무상 질병의 발견을 위한 의학적 검사, 노동력상실도의 판정을 위한 의료진단,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의 제공을 안내해야 한다. 근로자들의 건강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5.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훈련 내용의 개발에 있어 노동보훈사회부와 협력하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률을 알리고 보급하고 교육시켜야 한다.
6. 이 법의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상 질병의 목록을 개발,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 보완해야 한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의료진단을 준비한다. 관련 부처/부문과 협의한 후, 각 직업/직무에 대한 보건 기준을 개발하고 공표한다.
7. 산업안전보건 정보를 모니터링, 집계, 제공해야 한다. 통계를 작성하고 업무상 질병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한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한다.
8. 과중, 유해, 유독 직업과 매우 과중, 유해, 유독 직업의 목록에 대한 평가 기준을 구축하는 데 있어 노동보훈사회부와 협력해야 한다.
9. 법률에 규정된 대로 산업안전보건 법률의 이행을 조사, 감독하는 데 있어 노동보훈사회부와 협력해야 한다.
10. 매년, 자신의 관리하의 산업안전보건 정책과 법률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노동보훈사회부에 송부해야 한다.

제86조 모든 수준의 인민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국가적 관리 책임

1. 법적 규범 문서와 지역적 기술 규정을 개발하고 이를 발표를 위해 관할 국가기관에 제출하거나 자체 권한 범위 내에서 발표해야 한다.
2. 지역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리에 책임을 진다. 지역에서 산업안전보건 법률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3. 매년, 지역에서 산업안전보건 정책과 법률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동급의 인민 위원회에 송부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대로 관할 국가기관의 요청에 따라 임시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4. 매년, 지역의 실제 특성에 따라, 지역의 산업안전보건 법률에 관한 소통과 보급,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계약이 없는 근로자들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법률에 관한 소통과 보급, 교육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5. 자체 권한 범위 내에서 지역의 산업안전보건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87조 국가 산업안전보건 표준의 개발 및 발표와 이의 개발 및 발표를 위한 책임

1. 과학기술부는 국가 산업안전보건 표준 개발 계획을 승인하고 국가 산업안전보건 표준을 발표해야 한다.
2. 노동보훈사회부는 국가 산업안전보건 기술 규정의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부처 및 부처급 기관과 협력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3. 부처 및 부처급 기관은 노동보훈사회부의 동의를 얻은 후, 정부에서 부과한 국가 산업안전보건 표준 개발과 국가 산업안전보건 기술 규정 개발 업무를 주도해야 한다.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국가 산업안전보건 표준과 기술 규정 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은 이를 국무총리에 보고해 국무총리가 검토 및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 산업안전보건 표준과 기술 규정의 평가는 표준과 기술 규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4. 노동보훈사회부는 국가 산업안전보건 표준을 개발하고 이 조의 제3항에 규정된 대로 권한 범위 내에서 국가 산업안전보건 기술 규정을 공표해야 한다. 새롭거나 여러 부처 및 부처급 기관의 관리와 관련되는 국가 산업안전보건 표준의 개발, 국가 산업안전보건 기술 규정의 개발 및 공표에 대한 책임의 결정을 위해 국무총리에게 이를 제출할 때 부처 및 부처급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5. 보건부는 국가 산업안전보건 표준을 개발하고 이 법의 제85조에 규정된 대로 권한 범위 내에서 국가 산업안전보건 기술 규정을 공포해야 한다. 기타 부처 및 부처급 기관에 의해 개발된 국가 산업안전보건 표준 및 기술 규정의 산업안전보건 내용에 관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88조 국가 산업안전보건 협의회와 성의 산업안전보건 협의회

1. 국가 산업안전보건 협의회는 산업안전보건 정책과 법률의 제정, 개정 또는 보완에 있어 정부를 지원하는 자문 기관이다. 국가 산업안전보건 협의회는 국무총리에 의해 설립되고 노동보훈사회부, 보건부, 베트남 노동총연맹, 베트남 농민연합의 대표자들과 사업주 대표조직, 관련 부처/부문의 대표자들과, 그리고 몇 명의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와 과학자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된다.
2. 성의 산업안전보건 협의회는 지역의 산업안전보건 정책과 법률의 제정과 이행에 있어 성의 인민위원회를 지원하는 자문기관이다. 성의 산업안전보건 협의회는 성의 인민위원회의 의장에 의해 설립되고 성의 노동보훈사회부, 보건부, 노동동맹, 농민연합, 일부 기업, 기관, 조직의 대표자들과 지역의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 및 과학자들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된다.
3. 매년, 산업안전보건 협의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평등하고 안전한 근로조건의 추진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과 법률의 이행의 실효성 개선을 위해, 사업주, 근로자, 노동조합, 사업주 대표조직 및 국가기관 간 정보의 공유와 이해의 증진을 위한 대화를 조직하여야 한다.
4. 정부는 국가 산업안전보건 협의회와 성의 산업안전보건 협의회 설립, 기능, 임무, 구성 및 운영의 세부사항을 정해야 한다.

제89조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1.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은 중앙과 성의 국가노동관리기관의 전문 감독관이다.
2. 방사능, 석유 및 가스 탐사와 채굴, 철도·수로·도로·항공 수송 또는 인민군 분야의 산업안전보건 조사는 해당 분야의 국가 관리 기관이 산업안전보건 감독관과 협력하여 수행해야 한다.
3. 정부는 이 조의 제1항에 정의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조직 및 운영과 이 조의 제2항에 정의된 부문 간 협력체계의 세부사항을 정해야 한다.

제90조 산업안전보건 위반 행위의 처리

1. 산업안전보건 법률을 위반한 자는 위반의 성격 및 정도에 따라 행정적 제재 또는 기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률에 정해진 대로 결과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2. 이 법의 규정, 국가의 이익, 조직과 개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기 위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자는 위반의 성격 및 정도에 따라, 징계 조치 또는 기소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률에 정해진 대로 결과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3.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를 30일을 초과해 지연하거나 이 법의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보험의 보험료와 급부금을 유용한 사업주는 미납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것과 상관없이 법적처리 대상이 되고, 미납보험료 금액 및 지연일수에 따라 전년도 사회보험기금 투자의 이자율의 두 배의 이자율을 지불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당국의 요청에 따라 은행과 기타 금융 기관, 재무성은 사업주의 예금액에서 미납보험료와 이 금액에 따른 이자율을 인출해 사회보험기관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4. 정부는 이 법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의 행정적 위반에 적용되는 제재의 조치와 유형, 비율의 세부사항을 정해야 한다.

제91조 산업안전보건의 협력 메커니즘

1. 산업안전보건의 협력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실시되어야 한다.
 - a) 노동보훈사회부는 이 조의 제2항에 규정된 협력 활동을 이행할 때 책임 범위 내에서 기타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기관 및 성의 인민위원회를 이끌고 이러한 기관들과 협력해야 한다.
 - b) 모든 수준의 산업안전보건 국가적 관리 기관은 관련 분야의 산업안전보건 활동에서 관련 정치조직, 사회정치조직, 사회정치직업조직, 사회직업조직 및 기타 조직과 협력해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 협력의 내용

- a) 산업안전보건 정책과 법률, 산업안전보건 표준과 기술 규정의 개발
- b) 국가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의 개발과 기록부의 작성
- c)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 실패를 초래하는 사고 및 기술적 사건,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정책 및 급부금의 조사
- d) 산업안전보건 정보, 소통, 교육, 훈련, 통계 및 보고서의 제공, 엄격한 산업 안전보건 기준이 적용되는 기계, 장비 및 용품의 평가
- dd) 산업안전보건 조사와 감독, 산업안전보건 위반 행위의 처리
- e) 산업안전보건 관련 칭찬과 보상
- g) 연구 및 산업안전보건 과학, 기술의 적용

3. 정부는 이 조의 세부사항을 정해야 한다.

제VII장 시행 조항

제92조 시행

1. 이 법은 2016.07.01부터 발효된다.
2. 사회보험법 No. 58/2014/QH13의 제III장 제3절에 규정된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보험에 관한 조항과 제84조 제4항, 제86조 제1항 b)와 제2항 a),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107조 및 제117조는 이 법이 발효되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3.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 운영 중이었던 산업안전 평가를 제공하는 조직과 산업 안전보건 훈련 기관은 운영 면허가 만료될 때까지 계속 운영 가능하다.

제93조 세부 규정

정부와 관할 국가기관은 이 법의 각 조와 각 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해야 한다.

이 법은 2015.06.25에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제13대 국회 제9회기에서 채택되었다.

국회의장

(서명날인)

응우옌 싌 흥(Nguyen Sinh Hung)